



“놀이터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”

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협회

수 신 수신처 참조
 (경유) 어린이놀이시설 담당
 제 목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자 교육이수 협조의 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놀이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3. 아래 근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.

- 가.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(이하 “법”) [시행 2012.1.27.] 부칙
- 나. 법 시행규칙 제20조(안전교육)
- 다. 법 제18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)
- 라. 행정안전부 제2013-17호 안전관리사업의 지원
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)
- 마. 경상남도청 제2013-1호 안전관리사업의 지원

4. 본 협회는 제3항 라항목에 의한, 정부지정 안전관리지원기관입니다.

5. 아래와 같이 본 협회의 2017년 안전교육 일정을 통보해드리오니, 각 관리감독 기관장께서는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자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

- 가. 교육일정

교육일시	교육장소	교육시간	비고
2017.10.19(목)	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(시민복지센터) 중앙청소년문화의집 3층 프로그램실	13:30 ~ 17:30 (4시간)	
2017.10.20(금)	강원도 춘천시 중앙로67번길 18 브라운가 춘천청소년문화의집 3층 나래터	13:30 ~ 17:30 (4시간)	

나. 교육신청 : 한국안전교육협회 (055-352-2276)

다. 교육비용 : 일금 오만원정 (₩50,000)

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협회 (농협)351-0581-5040-73

라. 준 비 물 :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지참

6. 2017년 하반기 안전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주체자교육 제3항 라항목의 근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

☛ 인터넷접수방법: <http://www.koreakid.co.kr>

한국안전교육협회 홈페이지 ⇒ 회원가입 ⇒ 로그인 ⇒ 신청하기

☛ 상담문의 : 055-352-2276




한국안전교육협회



수신처 :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주택단지, 도시공원, 대규모점포, 식품접객업소, 놀이제공영업소, 아동복지시설, 의료기관, 학원, 목욕장업소, 도로휴게실 내 놀이시설 관리주체자

교육팀장	박근영	대 리	장지현	행정실장	이은경	대 표	장종진
협 조 자							
시 행	교육팀-153 (2017.09.05)			/ 접수		(. . .)	
우 50423	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			홈페이지 주소		/www.koreakid.co.kr	
전화번호 (055) 352-2276	/ 팩스번호 (055) 352-5276			/ korea-kid @ hanmail.net		/ 공개	

교육신청서(관리주체 법정안전교육)

교육장소		교육일자	
관리주체 (계산서발행)	상호(명칭)		대표자
	주 소		
	사업자번호 (※고유번호증)	ex)000-00-00000	
	시 설 번 호	ex) 000000	
교육 신청자	성 명		사무실 전화 ()
	휴대전화(H.P)		사무실 팩스 ()
	전자우편 (e-mail)	@	
<p>위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신청합니다.</p> <p> 20 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_____ (서명/생략가능)</p>			
(사) 한국안전교육협회장귀하			
교육신청 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홈페이지 : http://www.koreakid.co.kr/ 회원가입 후 → 교육신청 클릭 ※ 교육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팩스신청을 권장합니다. - 전화 055-352-2276 / 팩스 055-352-5276 - 전자우편 korea-kid@hanmail.net 접수도 가능함 		
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협계좌 : 351-0581-5040-73 - 교육비 : ₩50,000 - 예 금 주 :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협회 ※ 입금 시 꼭 상호기관명이나 교육신청 접수자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※ 환불 시 꼭 3일 이전 환불신청을 바랍니다. (이후 신청 환불불가) 날짜 변경이후,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. 		
안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팩스로 꼭 부탁드립니다. ※ 현장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. - 교육비 ₩50,000 에 대한 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일반계산서를 신청하실 때 기재하신 E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. 		
문의처	☎ 055-352-2276		